

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의2] <개정 2024. 7. 23.>

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(제10조의5제1항 관련)

1. 응시자격

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141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일 것. 이 경우 목재교육 전문과정 이수 기준은 총 교육시간(목재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학위 소지 여부 및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임업 분야의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실무 경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부 교과목을 면제받은 사람은 면제받은 교과목을 제외한 교육시간을 말한다)의 8할 이상을 출석한 경우로 한다.

2. 시험과목

- 가. 목재교육개론
- 나. 목재교육실무
- 다. 목재교육방법론

3. 시험방법

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.

4. 합격기준

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.